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계법규

(사진기, 복사기, 필름을 중심으로)

1. 목 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80년도에 제정되었으며 경제기획원에서 시행하는 법이다.

이는 한마디로 대기업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독과점품목 생산, 유통업자)들의 지위남용 및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 규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결합을 제한하여 국가경쟁력 집중을 방지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할 수 있다.

2. 주요내용

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기준은 법 제2조 제7항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 법시행령 제3조에 그 기준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 최근 1년간의 국내 총 공급액이 300억원 이상인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

(1)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2) 3개 회사 이하 사업자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5% 이상(단, 이 경우 시장점유율 10%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 국내 총 공급액 = (총출하액 - 수출액 + 수입액) - 당해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간접세

○ 시장점유율 = 당해사업자 국내총공급액 ÷ 국내총공급액

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지정, 고시는 매년 다음년도 개시전까지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동법시행령 제5조) 1989년도 시장지배적 사업자 중 광학산업분야는 다음과 같다(경제기획원 고시 제88-5호 : '88. 12. 31).

일련번호	품 목 명	시장지배적 사업자명
58	사진원판 및 필름	한국후지필름판매(주) 두산산업(주)
128	카메라	삼성향공산업(주) 동원광학(주)
129	전자복사기	코리아제록스(주) (주) 신도리코 (주) 롯데캐논

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법 제 3조).

-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서 그 세부사항은 (동법시행령 제6조) 다음과 같다.
 - (가) 일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 상당기간 수급의 변동이나 그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현저히 상승하거나 그 하락이 근소한 경우
 - (나) 당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속하는 업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에 비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정당한 이유없이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는 경우
 - (다) 2개 회사 이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일정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당한 이유없이 동일 또는 유사한 금액이나 비율로 인상하는 경우
이러한 가격에 대한 검토는 경제기획원에서 하고 있다.
-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5) 기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불공정거래행위

동법 제15조에서는 소비자보호 및 공정거래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경제기획원 장관이 지정고시하게 되어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유리 또는 불리한 가격이나 거래조건으로 부당하게 상대방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 나.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하는 행위
- 다.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이와 관련된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경제기획원 고시 제85-2호 : '85. 6. 29)가 있으며 이는 부당한 경품류의 제공에 의한 고객의 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정해진 사항으로서 경품류라 함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거나 거래에 부수하지 아니 하더라도 광고에 의해 그 거래 상대방 또는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으로서 주로 물품, 금전, 할인권,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또는 연예, 영화 및 운동경기 등에의 초대권 등을 의미하며 여기에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라 함은 자기가 생산 또는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이 최종수요자에 이를 때까지의 모든 유통단계에서의 거래를 말한다(동고시 제2조). 그리고 사업자가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경품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이내이어야 하며 내점자에게 제공하는 경품류의 가액한도는 500원을 초과할 수 없다(동고시 제5조).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액	경품류가액한도
5,000원 미만	500원 이하
5,000원 이상 50만원 미만	거래가액의 10% 이하로 하되 최고 25,000원 이하
50만원 이상	거래가액의 5% 이하로 하되 최고 50,000원 이하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 경품류를 제공할 수 있는 회수 및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연 4회 이내로 하되 1회당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연 4회 이내로 하되 1회당 7일을 초과할 수 없고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회수와 관계없이 연간 15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동고시 제13조 제1항).

라.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마.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바.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행위까지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법에 정해져 있는 바 그 중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형태인 부당한 고객의 유인, 부당표시, 허위, 과장, 비방광고 행위에 관해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경제기획원고시 제86-4호 : '86. 7. 21)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부당한 고객의 유인(동고시 제6호)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도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는 경우

(나) 위계에 의한 방법(다음의 부당표시, 허위, 과장, 비방광고 행위에서 규정한 표시, 광고 이외의 방법)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등에 관해 자기의 것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유리 또는 우량하다고 하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자기의 것보다 불리 또는 불량하다고 선전 제시함으로써 고객을 오인하게 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부당표시(동고시 제7호)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수량, 재료, 성분, 품질, 규격, 함량, 원산지, 제조원, 제조방법, 효능, 포장 기타의 내용이나 거래조건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하거나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없이 경쟁사업자의 것에 비하여 자기의 것이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하거나 또는 자기의 것에 대하여 유리한 부분만을 비교 표시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3) 허위, 과장, 비방광고행위(동고시 제12호)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수량, 재료, 성분, 품질, 규격, 함량, 원산지, 제조원, 제조방법, 효능 기타의 내용이나 거래조건에 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 이 경우의 광고에는 사실상 광고효과가 있는 학술, 연구, 여론조사발표회 및 이와 유사한 방법을 포함한다.

(가) 자기의 것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거나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없이 경쟁사업자의 것에 비하여 자기의 것이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광고하거나 또는 자기의 것에 대해 유리한 부분만을 비교 광고함으로써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

(나)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비방하는 경우